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국제형사법정들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전일권은 형사의 성격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등에서 국가인의 민사적 형태의 분쟁에걸을 위해 행해져오던 것이기에 이 등을 섞어서 정말 국제법정을 만드는 것은 빈류적으로만 보자면 이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자에 대한 재판관할권도 형률적 책임은 사당과 함께 사라진다는 원만한 원칙에도 반합니다.

결국 이러한 수나한 문제들을 답답해대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한세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4. 5,6,9조의 내용은 좋습니다. 나한 조변호사님 의견처럼 검찰이 입증하고 재판부가 압리는 식으로 결정되도록 놓아두는 것이 사언스러운 것 같습니다.

5. 7조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국가가 국제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빛신 개념이고, 결과적으로 국가권제가 증명되었다하여도 범죄의 결정과 실행에 관련된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당한 예이지만 일본국 내지 일본국인은 모두 학의 나라가 되어 오이며 범죄참여자들의 죄책을 오리게 되고, 대중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김정일과 전향한 피해자로서의 북한주민들을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법학계에서 국가와 형사책임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책임행태에 있어서는 결국 민사배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취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안처럼 정부에 의한 직접적 개입이 있는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국가책임을 지거, 7조 2항의 기술처럼 불차별 등으로 인한 후속적인 책임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6. 조변호님 의견처럼 검찰과 수사 너무 적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소수내용에 선택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현재의 원안에 위하된 사실·재판부가 할 일들을 다 규정하여 놓았기에 검찰의 범주당이 과중한 것만으로 보이기때, 수석검찰관은 제외하고 필요하다면 국가변호 동시에 우리가 재판하기도 할 사안 대시 과고변로 검찰관수를 확충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과고를 어느 범위에서 결정하고,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죄책을 줄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 검찰은 형사소수가 기본범주이니까, 검찰과 함께 피고인들을 대리할 변호인들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개인배상에 대한 정구를 법정에서 제기하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의 형식이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을 합해놓는 것으로 되는 네, 두방향을 위한 아너라 바람직합니다.

유고 전범재판소규정에서도 자신들의 형사판결을 기적과 피해자기 피해국에 대하여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실 무력하고 불충분하지만 유고재판소의 경우 형사법정이라고 성직규정을 한에서 오는 문제이고, 우리의 경우는 만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니, 자체에 우리의 법정에서 민사배상문제에 관한 선제적인 결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재 일본법정에 계류중인 소송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률적 완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파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 결국 개인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이고 더 원격한 형태와 합의문- 명칭은 물론하고-형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독자적인 우리측 안이 필요한 가의 점은 고전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올립니다.